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률의 적용대상을 어촌으로 확대〉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62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6
1. 전부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총괄의견	6
(1) 발의 배경	6
(2) 조문 체계	8
(3) 총괄 검토의견	10
2. 주요 내용 검토	14
(1) 제명, 안 제1장 총칙(제명,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4
(2) 안 제2장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21
(3) 안 제3장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32
(4) 보칙, 벌칙 및 부칙(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부칙)	3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5

3. 회 부 일 : 2025. 3. 6.

II. 제안이유

농어촌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 유출로 인하여 경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문화·보건·보육 등 정주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경제·사회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 등을 목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해당 법률은 농촌 지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어촌 지역 및 어촌 주민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음.

이에 법 제명을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률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어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가능한 어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등의 정의(안 제2조)

- 1)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는 농어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소득,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등의 서비스를 말함.
- 2) “농어촌 서비스 공동체”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함.

나.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1) 정부는 농어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3) 정부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농어촌 서비스 공동체 등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농어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안 제8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등(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1)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음.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4) 해양수산부장관은 사회적 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어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어업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음.

마.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사

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바. 기부금품 접수 및 농어촌 서비스 협약 체결(안 제20조 및 제21조)

1)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IV. 검토의견

1. 전부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총괄의견

(1) 발의 배경

- 최근 농어촌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하여 문화, 교육, 교통, 보건 등 전통적인 사회기반이 축소되고 있고, 이에 농어촌 거주자들이 기초적인 경제·사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등 기존 거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기반 축소는 곧 거주민들의 만족도 저하와 정주여건 악화로 이어져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2024년에 수행한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¹⁾ 결과에 따르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²⁾의 4대 전략 부문별(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만족도가 농어촌지역이 5.5점, 도시 지역이 6.3점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 격차가 전년 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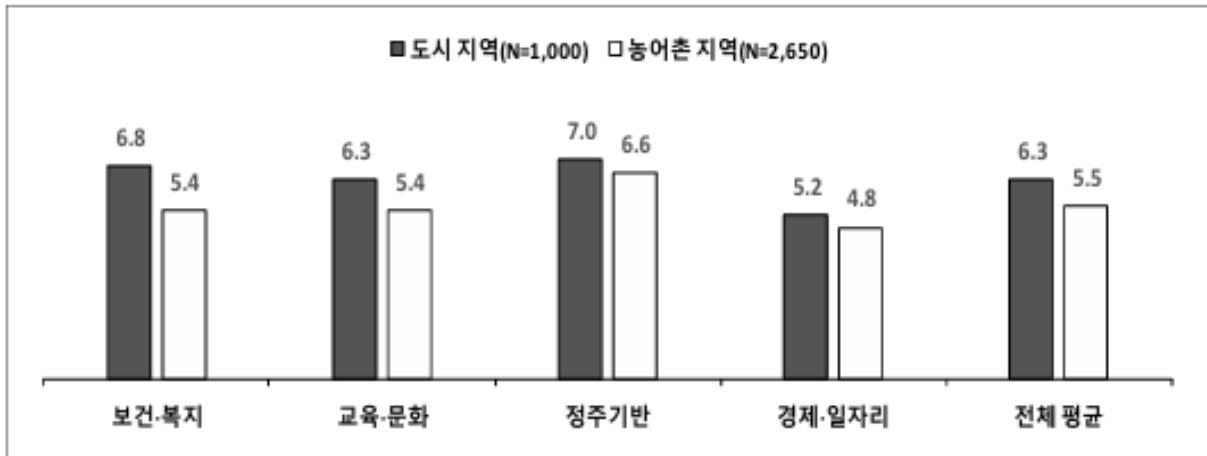
- 도·농간 만족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보건·복지는 1.4점, 교육·문화는 1.0점, 정주기반은 0.5점, 경제·일자리는 0.4점의 격차를 보임.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024.12.

2) 해당 기본계획은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며, 제4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었음.

[표] 4대 부문별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

(단위: 점)



자료: KREI(2024)

[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단위: 점)

부문	도시		농어촌		도·농 간 차이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보건·복지	6.9	6.8	5.5	5.4	-1.4	-1.4
교육·문화	6.2	6.3	5.6	5.4	-0.6	-1.0
정주기반	7.2	7.0	6.3	6.6	-0.9	-0.5
경제·일자리	5.0	5.2	5.2	4.8	0.2	-0.4
전체평균	6.3	6.3	5.6	5.5	-0.7	-0.8

자료: KREI(2024)

- 이러한 도·농간 경제·사회 서비스 격차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 구성원간 협력·연대 및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등을 추구하는 ‘자발적 공동체’ 또는 ‘사회적 경제’가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된 바 있음³⁾.
- 국회는 이러한 자발적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3

3) 관련 사례로 영광의 여민동락공동체에서 이동식 생필품 점포, 노인돌봄, 초등학생 체험, 도시청년 이주돌봄 등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익을 창출한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년 8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라 함)을 제정(2024.8.17. 시행)하였으나, 입법 당시 어촌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어 어촌에 대해서도 경제·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자발적 공동체 및 사회적 어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적용대상에 어촌을 추가하여 어촌에 대해서도 자발적 공동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어촌지역의 생필품 공급, 돌봄 서비스의 제공 등 경제·사회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2) 조문체계

- 전부개정안은 총 5개 장, 24개 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조문체계는 기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제명을 기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률의 목적(제1조)과 정의(제2조), 활성화 계획 수립(제5조) 등 전체 조문에서 ‘농촌, 농업’과 병렬적으로 ‘어촌, 어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하고 있으며, 신규 조문으로는 사회적 어업공동체 지정에 관한 안 제14조가 있음.

[표]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조문체계 비교

구분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명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6조(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제6조(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제2장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2장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제8조(농어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9조(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10조(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11조(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12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12조(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등)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등)
	<신 설>	제14조(사회적 어업공동체 지정 등)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제15조 (사회적 농장 등 에 대한 지원)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제16조 (교류협력 및 농어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제3장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제3장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제16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7조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7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제18조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구분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18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u>제19조</u> (<u>농어촌</u>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u>제20조</u> (기부금품의 접수)
	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u>제21조</u> (<u>농어촌</u> 서비스 협약)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1조(청문)	<u>제22조</u> (청문)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u>제23조</u>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23조(과태료)	<u>제24조</u> (과태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총괄 검토의견

- 현재 어촌은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활 기반 감소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고 있고, 202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연구결과⁴⁾에서도 어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농촌과 비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사회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짐.
- 2023년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0%로 전국 기준(19.2%)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고, 일부 도서지역 어촌의 경우 기본적인 교통여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⁵⁾ 사회적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표] 2022년 기준 4대 부문별 만족도 비교(도시, 농촌, 어촌)

(단위: 점)

4) 이상규·윤영준, 「2022 어촌·어업인 삶의 질 만족도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12.

5) 2021년 행정안전부 조사를 기준으로,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고 항로가 없어 여객선, 도선 등이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섬이 유인도 464개 중 73개(주민 1,025명)로 나타남.

세부항목	어촌	농촌	도시	농어 격차 (어촌-농촌)
보건·복지	5.8	5.8	7.0	-
교육·문화	5.4	5.4	6.4	-
정주여건	6.2	6.4	7.1	-0.2
경제·일자리	5.6	5.3	5.6	0.3
전체 평균	5.8	5.7	6.3	0.1

자료: KMI(2022)

[표] 어가 및 어가인구(2019년~2023년)

(단위: 천 가구, 천 명, %, %p)

구 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어 가	50.9	43.1	43.3	42.5	41.8	-0.8	-1.8
어 가 비율(%)*	0.3	0.2	0.2	0.2	0.2	0.0	-
어 가 인 구	113.9	97.1	93.8	90.8	87.1	-3.7	-4.1

자료: 통계청(2024)

[표] 연령별 어가인구(2022~2023년)

(단위: 천 명, %)

구 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2	90.8 (100.0)	8.4 (9.3)	3.7 (4.0)	7.5 (8.3)	14.8 (16.3)	31.3 (34.5)	25.1 (27.7)
2023	87.1 (100.0)	7.0 (8.0)	3.3 (3.8)	6.6 (7.6)	13.4 (15.4)	30.9 (35.5)	25.8 (29.7)

자료: 통계청(2024)

□ 개정안은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어촌에 대하여도 농촌과 동일하게 자발적 공동체 지원을 통한 경제·사회서비스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농촌과 어촌 간 형평성 제고,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으로 보여짐.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우선 개정안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7조),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안 제9조) 등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들에 어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사무의 수행주체를 ‘정부’로 일괄 개정하였는데, 이 경우 사무의 수행주체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무의 내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으로 수행주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규정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위임사항의 성격에 따라 대통령령이 아닌 각 소관 부처의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으므로, 위임사항별로 적절한 위임입법의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현행법은 1년의 준비를 거쳐 2025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바, 기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 준비 단계 및 시행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고려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전 부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경제·사회적 서비스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발적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다만, 활성화계획의 수립(안 제5조) 등 일부 조문에서 사무의 주체를 ‘정부’로 규정한 것은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임규정 역시 개정안의 ‘대통령령’에서 각 소관 부처의 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검토

(1) 제명, 안 제1장 총칙(제명,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가. 개정안의 요지

□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1조는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라는 목적에 어촌을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2조는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정의에 ‘사회적 어업공동체’ 등 어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조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 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간 협력과 연대’라는 기본원칙에 어촌을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및 시·도, 시·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실태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전부개정안 조문

제명,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u>농어촌</u>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u>농어촌</u>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u>농어촌</u>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

제명,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농어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 일자리·소득 관련 서비스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3. “농어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제9조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제12조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농어업”이란 농어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장을 말한다.

6. “사회적 어업공동체”이란 사회적 어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체를 말한다.

7. “농어촌 재능나눔활동”이란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함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에 있어서는 농어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와 농어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

제명,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등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3.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어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사회적 어업공동체 및 농어촌 재능나눔활동 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이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8조에 따른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및 제19조에 따른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명,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시·도 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제명,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전부개정안의 제명과 입법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어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부합하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짐.

1) 안 제2조 정의규정 관련

- 이와 관련, 안 제2조는 기존 정의규정에 규정된 ‘농촌’과 ‘농업’을 모두 ‘농어촌’ 및 ‘농어업’으로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 어업공동체’의 개념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사회적 농장’에 대응하는 것으로 어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농장과 같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의 사람에 대한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안 제5조·제7조의 활성화 계획 등 관련

- 다음으로, 안 제5조는 농어촌주민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경제·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존 ‘농촌 경

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어촌을 포함하는 것이고, 안 제7조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역시 기본 법률의 내용에 어촌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수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그 주체를 ‘정부’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법률상 ‘농촌’을 ‘농어촌’으로 변경하면서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활성화계획 및 실태조사를 각 소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 또는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소관분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수립·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계획 및 실태조사의 성격·내용에 맞게 계획 마련 주체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계획의 수립 주체 및 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개정안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이 역시 기존 농촌에 한정되어 있던 계획을 농어촌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어촌 분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임.

다만,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의 공표·통보,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의 위임사항은 절차적, 기술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법과 같이 부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임규정의 형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안 제2장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제8조는 농어촌 주민 등의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3조는 사회적 농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사회적 어업공동체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사회적 농장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교류협력 및 농어촌 재능나눔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전부개정안 조문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2장 <u>농어촌</u>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8조(<u>농어촌</u>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촌</u> 주민, <u>농어촌</u>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u>농어촌</u> 지역 공동체 기반의 <u>농어촌</u>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교육훈련기관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상담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 계획이 있을 것
3.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4.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법정리 1개 이상일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을 유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어촌 주민,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관리의 주기,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어촌 서비스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지역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것
2.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내부규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을 것
3.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있을 것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가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지원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
2.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 인력, 조직 및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농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회적 어업공동체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회적 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어업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이하 “어업경영체”라 한다)이거나 어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

2. 사회적 어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3. 사회적 어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사회적 어업 운영 장소, 인력, 조직 및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회적 어업공동체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적 어업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어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어업공동체(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적 어업공동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회적 농장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사회적 농장 및 사회적 어업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적 어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어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농장·사회적 어업공동체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류협력 및 농어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과 도시,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및 단체의 농어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류협력 및 농어촌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재능나눔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안 제2장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은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상담을 지원하고,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사회적 어업공동체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제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주체를 육성·지정·관리하는 내용임.

이는 농촌 및 농업을 대상으로 규정된 기존 조문에 어촌 및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어촌 및 어업에 대해서도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지원·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1) 전부개정안에 따른 어촌 공동체의 유형

- 전부개정안에 따라 규정되는 어촌 공동체로는 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제9조),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제12조), 사회적 어업 공동체(제14조)가 있음.
- 안 제9조 및 제12조는 어촌에 대해서도 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

체를 지정해 지원·육성 및 관리(안 제9조)하는 한편,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어촌 주민 개인 등이 상호 협력하여 특정한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육성(안 제12조)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기존 법에 따른 농촌 공동체에 어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임.

□ 이와 관련, 현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를 안 제9조에 따른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행 법체계상 어촌계는 법인 또는 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 제9조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지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해양수산부는 어촌계가 현재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회간접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교육·지원, 후생사업 등의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이미 수행하고 있고,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어촌에 대한 해당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어촌계를 전부개정안에 따른 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참고할 수 있겠음.

[표] 어촌계의 업무 및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비교

어촌계의 업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정의 (전부개정안 제2조제2호)
1. 교육·지원사업 2.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중략) 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9.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이하 생략)	1. 일자리·소득 관련 서비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자료: 해양수산부

□ 또한, 안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어업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13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회적 농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응되는 것이며, 어업 분야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⁶⁾과 유사한 공동체를 지정해 활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전부개정안은 사회적 어업공동체의 지정요건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이거나 어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 사회적 어업 프로그램 운영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계획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그 지정 취소의 구체적인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법의 사회적 농장에 관한 규정을 차용한 것으로 보임.

[표] 전부개정안에 따른 어촌 공동체 유형

구 분	어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공동체
	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지정대상	(사회적) 협동조합,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어촌 주민	어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구성	5인 이상		-
지정요건	•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 내부규약 수립 • 서비스 범위가 법정 리 1개 이상	• 서비스계획 수립 • 내부규약 수립 • 재원조달 계획	• 사회적 어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이수 • 사회적 어업 운영장소, 인력, 조직 및 시설·설비 확보
지원사항	• 조직화,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지원	• 컨설팅, 정보제공, 홍보 • 사회적 어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 협력·연계 지원
역할 및 대상	• 지역내 사회적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 주체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및 어업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자료: 해양수산부

2)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관련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각각 교육훈련기관, 농어촌 공동체, 사회적 농장, 사회적 어업공동체 등의 운영 및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련된 위임규정을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

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기존에 농촌·농업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농어촌 및 농어업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어촌·어업 분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부적합한 점을 고려하여 위임 형태를 대통령령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위임규정 중 교육훈련기관, 지역공동체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항⁷⁾의 경우에는 수범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및 해당 위임내용이 주로 절차적·기술적 분야에 관한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위임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위임내용들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의 이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으로, 기존 법률과 같이 부령(‘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안 제16조 자구수정 필요

- 안 제16조제1항은 국가 등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과 도시,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타 산업간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어업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농업’을 ‘농어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안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등에 지정 취소에 관한 위임규정이 있음

(3) 제3장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안 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

가. 전부개정안의 요지

□ 안 제17조는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수행업무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21조는 정부와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간 농어촌 서비스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전부개정안 조문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3장 <u>농어촌</u>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제17조(<u>농어촌</u>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u>농어촌</u>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u>농어촌</u>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받은 공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인력·시설 기준을 갖출 것

3.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③ 전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2.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기부금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4.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망 구축

5.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

6. 그 밖에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전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시민사회 단체 대표
3.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4. 지역 내 농어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5.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3. 제19조에 따른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
4. 제19조에 따른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 지원한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인력·시설 기준을 갖추 것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3.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 ③ 지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집행의 지원
 2.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과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계획 심사
 3.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전달과정, 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 등 점검·평가
 4.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한 교육 및 자문 등 지원
 5.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와 농어촌 재능나눔활동 희망자의 모집 및 연계
 6. 농어촌 주민과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연대·협력 지원
 - ④ 지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어촌 서비스 협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어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서비스 협약의 기준,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지원기관, 지역지원기관을 지정·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심의를 위한 지역위원회의 설치 등 각종 지원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던 지원기관에 어촌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임.

1) 안 제17조 전국지원기관 관련

□ 이 중 안 제17조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은 국가적 측면에서 관련 사업 계획 수립이나 재원 확보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계획된 것이며, 국가 예산지원 및 어촌 공동체에 대한 전국

차원의 평가, 우수 단체 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지원기관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전국지원기관으로 지정(2024.12.24.)하였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부처 유관기관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⁸⁾ 및 한국어촌어항공단⁹⁾이 어촌경제·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2) 안 제21조 농어촌 서비스 협약 관련

- 다음으로 안 제21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간 ‘농어촌 서비스 협약’ 체결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협약의 기준,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법과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현행 ‘농촌 서비스 협약’을 ‘농어촌 서비스 협약’으로 변경하고 협약 체결 주체에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시키는 등 기존의 농촌을 기준으로 한 조문체계에 어촌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이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농어촌 서비스 협약 주체에 지방자치단

8) 섬·어촌지역에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사업의 참여기관이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려는 어촌형 리빙랩 시범사업을 시행(충남 태안 등 3곳) 중임.

9) 찾아가는 치아검진 서비스, 어촌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체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로의 위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위임규정의 경우 농어촌 서비스 협약의 기준, 체결 절차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려는 것이므로, 부령, 즉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보칙, 벌칙 및 부칙(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부칙)

가. 전부개정안의 요지

- 안 제22조는 교육훈련기관, 사회적 어업공동체 등의 지정 취소 신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는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려는 것임.

[표] 전부개정안 조문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부칙
제4장 보칙
제2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u>농어촌</u>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4. <u>제14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 어업공동체의 지정 취소</u> 5. 제17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6. 제19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u>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부칙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4조(과태료) ①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안 제22조

- 안 제22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및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등의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정 취소와 같이 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충분한 심의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2) 안 제23조

- 안 제23조는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 및 국가·지자체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임.

3) 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사회적 농장 및 사회적 기업공동체로 지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지정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규정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4) 안 부칙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려는 것으로, 하위법령의 개정 등 개정안의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제정 시에도 부칙에서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을 규정¹⁰⁾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전부개정안의 시행에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0) 부 칙 <법률 제19640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422